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62

제출연월일: 2017. 5. 31.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미적용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별표 1)
- 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명 변경(별표 2)
 - 세무과를 세무2과로 변경

3. 근거법규

-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9조
- 나.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 다. 「지방자치법」 제91조
- 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9조
- 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8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17. 5. 15. ~ 2017. 5. 22.(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8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 실 과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정비사유 |
|-----------|----------------------------------|------------------|------|
| | 1.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 지역보건법 제5조 | |
| | 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6조 | |
| | 1. 1 2 1 2 1 | | |
| |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개설등록·변경 | 약사법 제20조 | |
| | 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 | 같은 법 제22조 | |
| | 다. 약국외 의약품 조제행위승인 | 같은 법 제23조 | |
| | 라. 약국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 같은 법 제41조 | |
| | 마.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 바.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 사.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 아. 시설개수 명령 등 | 같은 법 제74조 | |
| |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같은 법 제75조 | |
| | 차.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환 경 | 카.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 같은 법 제78조 | |
| 위생과 | 파.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 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 3.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 하 | | |
| | - 가. 개설·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 다.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 라. 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 |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같은 법 제36조 | |
| | 바.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38조 | |
| | 사.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40조 | |
| | 자. 허가신고증의 갱신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 |
| | | 시행규칙 제37조 | |
| | 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실 과 | 위임사무명 | 근 거 법 령 정비사유 |
|-----|----------------------------|-----------------------|
|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
| | | 한 법률 제19조 |
| | 나. <삭제> | |
| | 다. 정기 예방접종 | 같은 법 제24조 |
| | 라. 임시 예방접종 | 같은 법 제25조 |
| | 마. 예방접종의 공고 | 같은 법 제26조 |
| | 바. <삭제> | |
| | 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27조 |
| | 아. 예방접종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같은 법 제28조 |
| | 자.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같은 법 제31조 |
| | 차.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36조 |
| | 카.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
| | 설치 | 시행규칙 제28조 |
| |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 같은 법 제41조 |
| | 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같은 법 제47조 |
| | 하. 감염병의 예방조치 | 같은 법 제49조 |
| | 거. 소독업의 대행 | 같은 법 제56조 |
| 환 경 | 너. 소독업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
| 위생과 | 더.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57조 |
| | 러. <삭제> | |
| | 머. 소독업자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청문 등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
| | 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같은 법 제42조 |
| | 서. 감염병 예방위원의 임명 및 해촉 | 같은 법 제62조 |
| | 어. 경비징수 | 같은 법 제69조 |
| | 저.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3조 |
| | 처. 감염병 표본감시 등 | 같은 법 제16조 |
| | 커.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반 설치 | 같은 법 제18조 |
| | 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
| | | 시행령 제20조 |
| | 퍼.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같은 법 제29조 |
| | 허.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 같은 법 제43조 |
| | 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6조 |
| | 노.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소독 | 같은 법 제49조, 제51조 |
| | 도. 경비부담 | 같은 법 제64조 |
| | 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70조 |
| | 모.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 같은 법 제74조 |
| | | |
| | | |

| 실 과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정비사유 |
|----------|---|---|------|
| 실 과 환 생과 | 5. 삭제<2012.12.28> 6.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나. 의료인단체(분회)설치 신고 다. 의원·치과의원 등 개설·변경신고 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마. 폐업·휴업신고 바. 삭제<2012.12.28> 사. 업무개시 명령 아. 보고와 업무검사 자. 시정명령 등 차. 개설허가 취소 등 카. 과징금 처분 타. 의료지도원 임명 파. 청문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거.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변경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안경업소 폐업 등의 신고 다.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 등 | 의료법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38조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15조 | 정비사유 |
| 위생과 | 라. 안경업소 시정명령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영업정지·등록취소 바. 청문 사. 과태료부과·징수 8.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치과기공소의 폐업 · 변경신고 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라. 구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등록의 | 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3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 제35조 같은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35조의 2 같은 법률 제45조 | |
| | 요청 마.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바. 개설허가취소(폐쇄) 및 업무정지 등 사. 청문 아.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 |

| 실 과 | 위임사무명 | 근 거 법 령 | 정비사유 |
|---------------|----------------------------|-----------------|------|
| | 10.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허가(지정) 및 허가(지정)사항변경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 |
| | | 제6조 | |
| | 나.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와 등재 | 같은 법률 제7조 | |
| | 다. 사고마약류의 처리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
| | 라.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업무보고 | 같은 법률 제36조,43조 | |
| | 마. 출입ㆍ검사 및 수거 | 같은 법률 제41조 | |
| | 바. 대마초의 폐기명령 등 | 같은 법률 제42조 | |
| | 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률 제44조 | |
| | 아.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 |
| | 자. 과징금 부과처분 | 같은 법률 제46조 | |
| | 차. 마약류감시원 임명 | 같은 법률 제48조 | |
| | 카.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및 해촉 | 같은 법률 제49조 | |
| | 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검진 및 역학조사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
| -1 -1 | | 제8조,10조 | |
| 환 경 위생과 | │ 나 지류권 // | 같은 법 제14조 | |
| | 12.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모자보건법 제9조 | |
| |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같은 법 제10조 | |
| | 다. 난임 극복 지원사업 | 같은 법 제11조 | |
| | 라.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같은 법 제12조 | |
| | 마. 삭제<2012.12.28> | | |
| | 13.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 모자보건법 제15조 | |
| |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 같은 법 제15조의3 | |
| | 다. 보고,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의7 |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15조의8 | |
| |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같은 법 제15조의9 | |
| | 바.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10 | |
| | 사. 과징금 | 같은 법 제15조의11 | |
| | 아. 삭제<2012.12.28> | | |
| | | | |

| 실 과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정비사유 |
|--------|-------------------------|----------------------|------|
| | 라. 금연 및 절주운동 등 | 같은 법 제8조 | |
| | 마. 금연을 위한 조치 | 같은 법 제9조 | |
| | 바. 금연지도원 운영 | 같은 법 제9조의5 | |
| | 1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구강보건법 제5조 | |
| | 가.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 같은 법 제7조 | |
| | 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같은 법 제15조 | |
| | 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 | |
| | 라. 모자구강건강관리 | 같은 법 제16조 | |
| | 18. 건강검진기관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 | |
| | /r. 신경검신기관의 시경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같은법 제16조 | |
| 환 경 | 다. 청문 | 같은법 제17조 | |
| 위생과 | | | |
| 77/84 | 19.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안전상비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
| | 나.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교부 | | |
| |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 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 마.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 |
| | 바.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
| | 사.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 | 20.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 |
| | 나.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 |
| | 다.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 같은 법 제10조 | |
| | | 같은 법 제11조 | |
| | | | |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 실 과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
| 세무2과 | 1.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
| 경 제 일자리과 | 1.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50조 | |
| 사 회 복지과 | 1.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교부 2.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신고 나. 개장 신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현 | 행 | | 개 정 | 안 | |
|---|--|--------|---|---|----|
|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 위임하는 사무 | 【별표 | E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 | 임하는 사무 | |
| 실과 위임사무명 1.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다 | 근 거 법 령 비고 | 실 과 | 위임사무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 음의 권한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지역보건법 제5조 같은 법 제26조 | 21 | 1.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나: 과태료 부과 징수 | 지역보건법 제5조 같은 법 제26조 | |
|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변경 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 다. 약국외 의약품 조제행위승연 라. 약국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시설개수 명령 등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카. 청문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징수 3.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폐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 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역정지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허가신고증의 갱신 및 지교부 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 환경위생과 | 나. 과태료 부과 성수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변경 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 다: 약국외 의약품 조제행위승인 라. 약국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시설개수 명령 등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카: 청문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 징수 3.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ㆍ폐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 명령 등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허가신고증의 갱신 및 재교 부 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 | |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 실과 위임사무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실과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기: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실시 나. <삭제> 다. 정기 예방접종 라. 임시 예방접종 마. 예방접종의 공고 바. <삭제> 사. 예방접종의 공고 바. <삭제> 사. 예방접종의 보존 및 보고 등 지: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키: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기: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기: 감염병 위해에 대한 방역조치 하: 감염병의 예방조치 거. 소독업의 신고, 휴업 등의 신 다. 소독업의 신고, 휴업 등의 신 다. 소독업의 시장명령, 영업정 지, 청문 등 러. <삭제> 머. 소독업자의 시정명령, 영업정 지, 청문 등 러. <삭제> 머. 소독업자의 시정명령, 영업정 지, 청문 등 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임명 해추 이 경비장수 자 감염병 예방위원의 임명 및 해복 경비장수 지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피. 대방접종 업무의 위탁 되는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 당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소독 경비부담 로 손실보상 모,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합의 제41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제59조, 법 제42조 같은 법 제42조 | | 환경위생과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가: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실시 나: 정기 예방접종 대의 예방접종 마다. 여기 예방접종의 라고 에방접종의 라고 에방접종이 보존 및 보고 예방접종이 보존 및 보고 이 바로 이 바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2 | |

| 현 행 | | 개 정 | 안 |
|--|------|--|--|
| 실과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 비고 실 | 일과 위임사무명 | 근 거 법 령 비고 |
| 실과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5. 삭제<20121228> 6.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나: 의료인단체(분회)설치 신고 다. 의원·치과의원 등 개설·변경 신고 마. 폐업휴업신고 바. 삭제<20121228> 사. 업무개시 명령 아. 보고와 업무검사 자시정명령 등 차. 개설허가 취소 등 카: 과징금 처분 타. 의료지도원 임명 파. 청문 하. 과대료의 부과 징수 기.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변경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나.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등록 등나.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등록 등나. 안경업소 보관 기관등록 등라. 안경업소 가설등록 등다. 안경업소 보조를 제상조 같은 법률제(13조 같은 법률제(23조 같은 법률제(2 | 3 | 5. 삭제<2012.12.28> 6.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기: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나, 의료인단체(분회)설치 신고 다. 의원·치과의원 등 개설·변경 신고 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마. 폐업·휴업신고 바. 삭제<2012.12.28> 사. 업무개시 명령 아. 보고와 업무검사 자. 시정명령 등 차. 개설허가 취소 등 카. 과징금 처분 타. 의료지도원 임명 파. 청문 하.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변경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안경업소 시정명령 마. 안경업소 시정명령 마. 안경업소 시정명령 마. 안경업소 기설등록의 영업 생 방사는록취소 바. 청문 사. 과태료부과 징수 8.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기: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기: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라. 무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등록의 요청 마.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그 거 법 령 비고 의료법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조 같은 법 제40조조조 같은 법 제40조조조조 같은 법 제40조조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조합 집 제40조조조합 집 제40조조합 집 제40조조합 집 제40조조합합 집 제40조조합합합 집 제40조조합합합합합 집 제40조조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 |

| 현 | 행 | | | 개 정 | 안 | |
|---|---|----|-----------------------|---|---|----|
| 실과 위임사무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실과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미그 |
| 자. 청문 차. 삭제<2012.12.28> 카. 삭제<2012.12.28> 타. 과태료 14. 삭제<2012.12.28> 타. 과태료 14. 삭제<2012.12.28> 15. 정신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명령 나. 과정금 부과처분 다.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 개신고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 개신고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제, 휴지,재 개신고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제 등 명령 바. 청문 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자. 퇴원명령 등 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조치의 해제 파. 임시퇴원 등 하. 외래치료 명령 거. 보고, 검사 등 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더. 퇴원자에 대한 조치 러.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16.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기.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기.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 나. 보건교육의 실시 등 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0조조 같은 법 제30조조조 같은 법 제30조조조 같은 법 제30조조조합조조합조조합조조합조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조합 | | 환 경 위 생 과 | 자. 청문 차. 삭제<2012.12.28> 카. 삭제<2012.12.28> 타. 과태료 14. 삭제<2012.12.28> 15. 정신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명령 나. 과징금 부과처분 다. 사회복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제 등 명령 바. 청문 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입원 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자. 퇴원심사 등의 청구 차. 기초정신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카. 퇴원명령 등 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입원 조치의 해제 파. 임시퇴원 등하. 외래치료 명령 거. 보고, 검사 등 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더. 퇴원자에 대한 조치 러.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16.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다음의 부과·징수다. 파대료의 부과·징수다. 과대료의 부과·징수다. 과대료의 부과·징수다. 급연 및 절주운동등다. 급연 및 절주운동등다. 급연을 위한조지 |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정신보건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 |

| | 현 | 행 | | | 개 정 | 안 |
|----------|--|---|----|-----------|--|---|
| 실과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실과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법령 |
| | 1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기: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나: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라: 모자구강건강관리 18. 건강검진기관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기: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다: 청문 | 같은 법 제16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 | | 1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기: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라. 모자구강건강관리 18. 건강검진기관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기: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다. 청문 | 같은 법 제16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
| 환경 위 생 과 | 19.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상비약품 판매자 등록신 청 나.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교부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마.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 청 등 바.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사.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신 설> 신신 설> 신신 설〉 신신 설〉 | 지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환 경 위 생 과 | 19.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상비약품 판매자 등록신 청 나.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교부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마.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 청 등 바.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사: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20.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나.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다.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사업 |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 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

근 거 법 규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1.6.7.>
 -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 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⑤ 삭제 <2002.1.19.>
 -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 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 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 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하는 것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 20. 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 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 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 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 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 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 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 한 자료 제공
 -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 「국민영양관리법」

-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

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8조의2(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조 신설 2016.12.30>

- 1.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관한 사항
- 2.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무
- 3.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
- 4. 징수포상금 관련 사항
- 5. 체납처분 관련 재산조회 업무
- 6. 결손처분(현년도분 포함)
- 7. 체납처분 유예(현년도분 포함)
- 8. 체납평가에 관련된 사항
- 9. 차량관련 체납번호판 통합영치 및 징수업무
- 10. 세외수입 업무(수입증지 포함) 총괄
- 11.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통합관리

의 안 번 호

1362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7. 5. 31.(수)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6. 9.(금)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가. 제안이유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미적용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명 변경(안 별표 2)
 - O 세무과를 세무2과로 변경

다. 근거법규

-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9조
- 2) 「국민영양관리법」제8조, 제10조, 제11조
- 3) 「지방자치법」제104조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9조
-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제8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영환)

- O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하는 사무의 상위법령 등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 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